미용업 시설기준 완벽 가이드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업 업종별·시설별 필수 준수 기준 총정리

1. 미용업 시설기준 개요 및 기본 원칙

미용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(공중위생영업의 시설기준)에서 정하는 엄격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영업신고 전 인테리어 시공 단계부터 관련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추후 행정처분이나 보완 명령으로 인한 개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> **핵심 체크포인트:**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**제1종 근린생활시설** 또는 **제2종 근린생활시설**이어야 하며, 불법 건축물이나 용도 미변경 장소에서는 영업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
2. 공통 시설 및 설비 기준

① 급수 및 배수 시설

- **상수도 및 온수 공급:** 깨끗한 수돗물(또는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지하수)이 상시 공급되어야 하며, 고객 시술 및 기구 세척을 위한 **온수 공급 장치(전기온수기, 보일러 등)**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.
- **배수 설비:** 샴푸대, 세면대, 소독 기구 세척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원활하게 역류 없이 배출되도록 배수관이 적절히 시공되어야 하며, 하수구 악취 차단을 위한 트랩(Trap) 설치가 필수적입니다.

② 소독 및 위생 설비

- **소독장비 비치:** 가위, 빗, 핀셋, 네일 도구 등 피부에 직접 닿는 기구를 소독하기 위한 **자외선 소독기(UV Sterilizer)** 또는 **자비소독(열탕소독) 장비**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.
- **소독약품 보관:** 소독에 필요한 약품(에탄올, 소독액 등)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수납함을 갖추어야 합니다.

③ 채광, 조명 및 환기 시설

- **조명 기준:** 작업장(시술 의자 및 베드 주변)의 조도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밝기(통상 300럭스 이상 권장)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**환기 시설:** 화학 약품(펌프, 염색약, 네일 젤 등) 냄새 및 유해 물질이 실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자연 환기창 또는 기계식 환기팬(환풍기, 공조 시스템)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.

④ 폐기물 및 세탁 시설

- **수거함:** 머리카락, 화장솜, 일회용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**뚜껑이 있는 밀폐형 폐기물 수거함**을 비치해야 합니다.
- **세탁물 관리:** 타올 및 가운 등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함(청결함 및 오염물 수거함 분리)을 마련해야 합니다.

3. 업종별 특화 시설 기준

미용업 세부 종목	필수 시설 및 설비 요건	주요 유의사항		
미용(일반) (헤어)	• 샴푸대 및 급·배수 시설 필수 • 시술 의자, 거울, 작업대 • 열처리 기구 및 미용 기기 안전인증(KC) 필한 제품	샴푸실과 대기실 공간 분리 권장		
미용(피부) (에스테틱)	• 시술용 베드 및 칸막이(커튼 등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) • 온장고(타올 소독용), 피부관리용 전문 기기 • 세면대 및 고객 탈의실·샤워실(선택적이나 권장)	타 업종과 공간 혼재 시 완벽한 물리적 분리 필요		
미용(네일) (네일아트)		네일 시술용 테이블 및 전용 의자	집진기(네일 파우더 및 냄새 흡입용) 설치 권장	소독기 및 화장품 보관장
아크릴 및 젤 시술 시 환기구 성능 중요				
미용(메이크업) (메이크업/속눈썹)	• 대형 거울 및 조명 화장대 • 시술용 체어 또는 베드 • 화장품 및 도구 전용 살균 보관함	눈가에 직접 닿는 도구의 위생 소독 철저		

4. 소방 및 안전 관련 법적 기준

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일반 미용업소는 화재 예방 및 고객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**소화기 비치:** 영업장 면적에 적합한 규격의 **분말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용 소화기**를 눈에 띄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최소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. (정기 점검 필수)
- **비상구 및 피난통로:** 출입문 외에 비상구가 설치된 경우,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고 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**누전차단기 설치:** 각종 미용 기기(드라이기, 스팀기, 열처리기 등) 사용 시 전력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규격에 맞는 누전차단기를 분전반에 설치해야 합니다.

5. 시설 공사 완료 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

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반입이 완료된 후 구청 위생과 담당 주무관의 현장 실사(또는 영업신고 전 사전 점검)에 대비하여 다음 항목을 최종 확인하세요.

- [] 건축물대장상 용도(제1·2종 근린생활시설) 적합 여부 확인
- [] 냉·온수가 원활하게 나오는 급수 및 배수 시설 작동 확인
- [] 자외선 소독기 및 필수 소독 약품 구비 완료
- [] 뚜껑이 있는 밀폐형 쓰레기통 및 청결 타올 보관함 설치
- [] 유효기간 내 검사된 소화기 비치 여부
- [] 미용사 면허증 원본 및 영업신고 구비서류 최종 편철

> **최종 조언:** 시설 기준 미비로 인한 영업신고 반려를 막기 위해, 인테리어 계약 전 관할 구청 위생과에 도면을 지참하여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